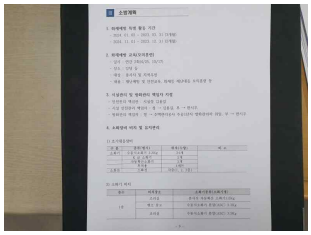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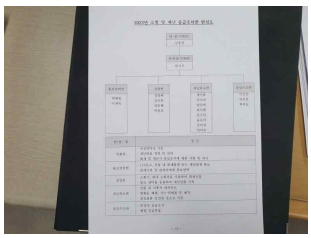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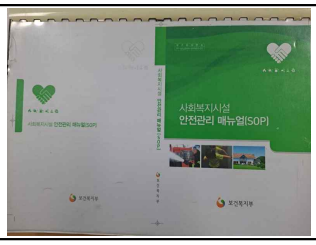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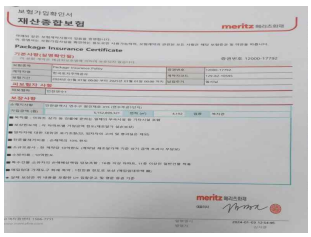
<2024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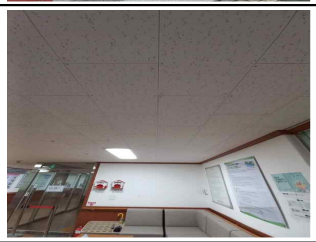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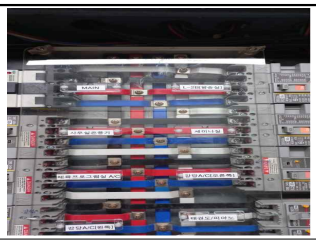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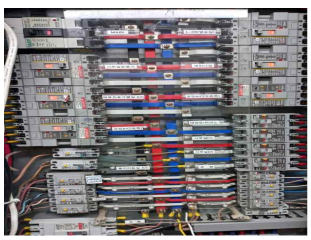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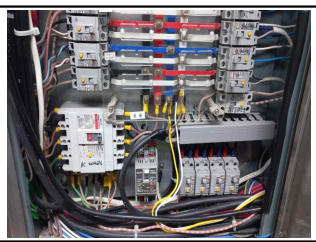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(1)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교육훈련	(1)		◆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계획서 작성함 ◆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◆ 안전계획서를 매년 수정, 보완하고 있음	◆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㎡ 이상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제20조6항 및 시행령 제24조,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37쪽 참고
	(2)		◆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 ◆ 정 · 부 안전 관리자 임명 *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신고서류 확인 ◆ 시설 내에 안전 관리자 성명 등 게시	◆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㎡ 이상 노유자시설 ◆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선임 기준 : 1명 ◆ 「소방시설법」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, 제23조 참고
	(3)		◆ 생활시설 연2회, 이용시설 연1회 안전교육 실시 ◆ 수시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◆ 실전 피난훈련 실시 ◆ 소방훈련·교육실시결과기록부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음	◆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㎡ 이상 노유자시설 중 상시 근무·거주인 10명 초과 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참고
	(4)		◆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포함 개별 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음	◆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22-23, 29-30쪽 참고하여 개별 시설에 맞는 매뉴얼 작성
(2) 책임보험 가입여부	(1)		◆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◆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충족함	◆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3 참고 ◆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 참고 ◆ 「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」 109~110쪽 참고
	(2)		◆ 배상책임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 사망 시 **1인당 1억 5천만 원** 이상 보상한도 설정 시 양호	
	(3)		◆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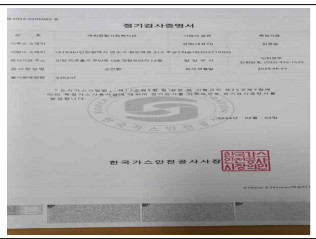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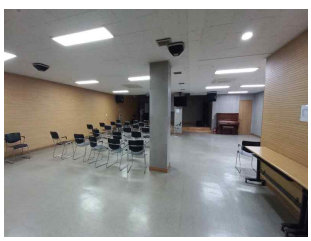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(3) 소방안전관리	(1)	 	◆ 바닥면적 33㎡ 이상 각 실별로 소화기 설치 ◆ 각층마다 소형소화기는 20m 간격으로, 대형소화기는 30m 간격으로 설치 ◆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바닥면적 25㎡마다 소화기 비치하고, 별도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(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으로 대체 가능) ◆ 주방화재용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◆ 소화기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	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2)		◆ 소화기 압력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음 ◆ 머리 쪽으로 들어 흔들면 밀가루 흐르는 소리가 남 ◆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교체 필요	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 제15조의4 참고
	(3)		◆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◆ 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 ◆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	◆ 자동화재탐지설비 :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㎡ 이상 노유자시설 ◆ 시각경보기 :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·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	 	◆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◆ 전원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 ◆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	◆ 생활시설 및 바닥면적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(24시간 상시 근무인 있을 경우 예외 인정)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·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		◆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◆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잘 보이며, 살수 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	◆ 생활시설 및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이상 600㎡ 미만인 노유자시설(단,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제)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제15조의6·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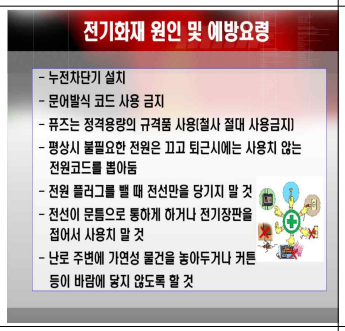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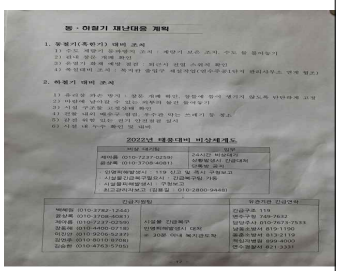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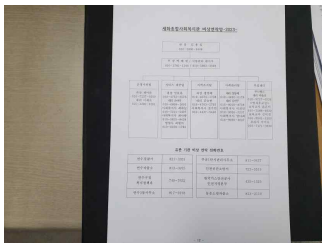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3] 소방 안전 관리	(4)		◆ 옥내소화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◆ 소화전 함 내 호스 및 관창이 들어 있음 ◆ 구경 40㎜ 이상의 것으로서 시설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의 호스를 갖추고 있음	◆ 연면적 1,500㎡이상 또는 지하층·무창층·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㎡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전층에 설치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「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5)		◆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이 없음 ◆ 소화전 설비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,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음 ◆ 해당 시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내일 것	
	(6)		◆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음 ◆ 실내장식 공사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려진 부분이 없음 ◆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없음	◆ 바닥면적 합계가 600㎡이상인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「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7)	 	◆ 수조의 옆면에 수위계가 있는 경우 수위계 전체 길이의 4/5 이상 유지 ◆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관(over flow) 유입구 최소높이까지 유지 ◆ 옥내소화전 1개당 13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 ◆ 옥외소화전은 35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 ◆ 스프링클러는 80리터*20분 소방용수 필요	◆ 소방청 고시「옥내소화전설비·옥외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◆ 옥내소화전 경우 최대 5개로 계산하여 2.6*5=13㎥ 수량 확보해야 함 ◆ 옥외소화전 경우 최대 2개로 계산하여 7*2=14㎥ 수량 확보해야 함
	(8)		◆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음 (주차차량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미흡) ◆ 소화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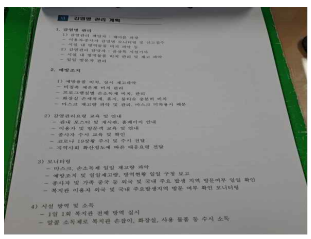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3] 소방 안전 관리	(9)		◆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음 ◆ 교류전원과 정상전원(직류 24볼트)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음 ◆ 화재 표시등에 불이 꺼져 있음	
	(10)		◆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 받음 ◆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상황 소방서로 통지함 ◆ 녹음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여부 확인	◆ 소방청 고시「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1)		◆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 지도 부착 ◆ 피난방법과 설명이 부착됨 ◆ 피난도우미가 지정되어 있음	◆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㎡ 이상 노유자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규칙 제14조의5 및 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 39-44쪽 참고
	(12)		◆ 유도등은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◆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쉬운 상태임	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3)		◆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◆ 비상조명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됨	◆ 바닥 면적이 450㎡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「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4)		◆ 피난층과 11층 이상 제외 모든 층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◆ 신체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ex)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는 승강식피난기가 적응성 있음	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,「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」45-50쪽 참고
	(15)		◆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이 없음 ◆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	◆ 소방청 고시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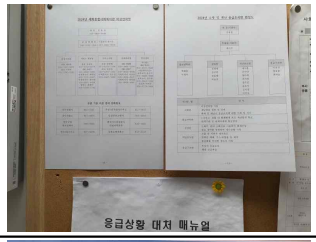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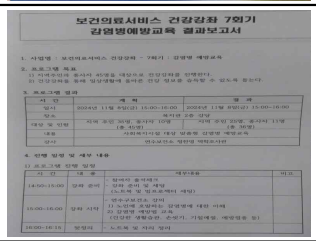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[3] 소방안전관리	(16)		◆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*의 경우,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◆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음 ◆ 대피로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음	◆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 : 3층 이상 층이고,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200㎡이상인 아동 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◆ 「소방시설법」 제10조 참고
	(17)		◆ 「건축법」 시행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규정에 맞게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있음 ◆ 방화셔터(방화문)이 화재감지기 작동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임 ◆ 방화셔터 작동 개소주변에 적재물이 없음	◆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46조 참고 ◆ 대상 :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◆ 방화구획,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, 외부 피난 가능한 연결복도 중 하나 설치
	(18)	해당사항 없음	◆ 제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	◆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 이상인 층 ◆ 「소방시설법」 시행령 별표5의 5호 가목 및 소방청 고시 「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 참고
	(19)	해당사항 없음	◆ 배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	◆ 6층 이상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◆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은 층수와 무관하게 배연설비 설치의무 ('15.9.22 이후) ◆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참고
	(20)		◆ 시설 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(블라인드 포함), 카펫, 종이벽지 외의 벽지,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음 ◆ 침구류, 소파, 의자의 경우 방염처리 권고할 수 있음	◆ 「소방시설법」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, 제20조 참고
	(21)		◆ 건축물 단열 시공법을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으로 했을 경우 단열재,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로 사용 ◆ 외단열 공법이 아닌 내단열	◆ 「건축물관리법」 시행령 제19조 (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) 참고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			시공의 경우 해당 없음	
	(22)		◆ 아래와 같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였음 ◆ 내부 마감재가 노후화 되어있지 않음	
	(23)	해당사항 없음	◆ 필로티 구조로 건물1층 전부 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◆ 필로티 구조일 경우 건축물 연면적 1,000m^2 미만 여부표시	
	(24)		◆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음	
(4) 전기 안전 관리	(1)		◆ 배.분전반의 단자, 터미널 등 내.외부의 관리상태가 적정함 ◆ 배.분전반의 개폐장치 조작 시 외부 장애물로 인한 문제가 없음	「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,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[별표2]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1262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315 참고
	(2)		◆ 금속제의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 기구의 전로 또는 주택의 옥내 전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됨 ◆ 차단기가 과열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고 관리상태가 적정함	「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,절차 등에 관한고시」 [별표2]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316 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124 참고
	(3)		◆ 옥내,외 배선의 전선용량이 차단기 전류 정격에 따라 적정함 ◆ 옥내,외배선이 적정한 공사방법에 의해 시공되었고 유지되고 있음	◆ 「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,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[별표2]참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212 참고 전기설비기술기준제50,51조참고
(5) 가스 안전 관리	(1)		◆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	◆ 「액화석유가스법」 시행규칙 별표20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시행규칙 별표7 참고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				
	(2)		◆ 가스시설에 손상이 없으며,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	「액화석유가스법」 시행규칙 별표20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시행규칙 별표7 참고
	(3)		◆ 보일러와 온수기의 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급기구와 환기구는 막힌 곳이 없음.	「액화석유가스법」 시행 규칙 별표20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시행규칙 별표7 참고 KGS CODE GC208(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.검사 기준)
	(4)	해당사항없음	◆ LPG저장시설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, 보관상태가 적절함	「액화석유가스법」 시행규칙 별표20
	(5)		◆ 도시가스. LPG 등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.수시 점검을 받고 있음	「액화석유가스법」제44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17조 등 참고
	(6)		◆ 연소기는 검사품 또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였음	액화석유가스법」제44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17조 등 참고
(6) 동절기 재난 대응 대책	(1)		◆ 시설 외형을 정기적으로 육안 점검 함 ◆ 시설 내 위험물 저장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함 ◆ 비닐하우스. 가·임시건물 등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함	
	(2)		◆ 폭설로 긴급 대피를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음 ◆ 피난안전지역까지 안내할 피난도우미를 지정하고 있음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	(3)		◆ 폭설로 인한 고립을 대비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음	
	(4)		◆ 폭설 제설장비(제설작업차량, 적사함, 염화칼슘, 모래주머니, 삽, 빗자루 등)를 갖추고 있음 ◆ 긴급 폭설 제설대책을 갖고 있음 (외부 지원체계 등 연락망 포함)	
	(5)		◆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동파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◆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시설은 집열판 관리를 잘하고 있음 ◆ 온수 탱크 등에 대한 보온관리가 잘되고 있음	
	(6)		◆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◆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음	◆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설은 시설 내 안전담당자 책임하에 교육 실시
	(7)	해당사항 없음	◆ 가스중단에 대비한 비상연료를 준비하고 있음 ◆ 도시를 벗어난 시설의 경우, 연탄이나 목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	
	(8)		◆ 재난발생 정보 수집절차가 계획되어 있음 ◆ 항상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◆ 재난방송 청취와 전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	
	(9)		◆ 관련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◆ 관할 협력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(7) 시설물 안전 관리	(1)		◆ 건축물이나 건물 주변에 지반 침하가 없거나 바닥 포장 상태가 양호함 ◆ 하중에 의한 천장 처짐 및 벽면 기울임 현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음 ◆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백태가 발생하지 않음	◆ 「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」 참고 ◆ www.sfms.or.kr(소규모 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) 홈페이지 '자료실'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
	(2)		◆ 철근 부식 및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음 ◆ 콘크리트 벗겨짐 또는 떨어짐 현상이 없음(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.0㎜이상, 박락 깊이가 20㎜이상인 경우 위험) ◆ 창호가 가울어진 부분이 없고, 단열기능이 있음	
	(3)		◆ 지붕. 옥상배수관 막힘 부분 없음 ◆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, 배수구 막힘 부분 없음	
	(4)		◆ 담장에 균열 및 침하 발생하지 않음 ◆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도 (위치 변경이나 뒤집어짐)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음	
	(5)	해당사항 없음	◆ 시설물 준공 시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	◆ 기존 공공시설물(건축물)내진 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(행안부,'20.7)
	(6)	해당사항 없음	◆시설물 내진 설계 적용이 안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"예"체크 1)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이거나, 2)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	◆ 기존 공공시설물(건축물)내진 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(행안부,'20.7)
	(1)		◆ 감염병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(현행화)하고 있음	

분야	항목	내 용		
		참고사진	세부평가항목	법령 등 근거
(8) 감염병 관리 대책	(2)		◆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(격리시설-관할 보건소-시군구 및 시도)를 구축하고 현행화 하고 있음	
	(3)		◆ 종사자,이용자,입소자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가 지정되어 있음	
	(4)		◆ 종사자, 이용자,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대응지침 등 교육(전파)을 실시함	
	(5)		◆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(대기)할 수 있는 격리 시설(공간)을 확보하고 있음	